

조선 후기 출제 경학 관련 御題를 통해 본 국왕들의 관심사^{*}

– 유생 응제 및 초계문신 친시를 중심으로

윤선영 **

-
1. 들어가며
 2. 조선 후기 어제 수록 자료와 시제 소고
 - 2-1. 수록 자료 개괄
 - 2-2. 출제 어제 소고
 3. 경학 관련 어제의 출제 양상과 특징
 - 관리 선발 과시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3-1. 경학 관련 어제의 대개와 출제 양상
 - 3-2. 경학 관련 어제를 통해 본 국왕들의 관심사
 - (1) 성균관 유생의 학업 성취와 경계
 - (2) 초계문신들의 학문 연마와 기본기 점검
 - (3) 학술적 정체성과 관심사
 4. 나가며
-

■ 국문요약

본고는 그간 정조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과거 시험의 어제(御題)를 조선 후기로 범위를 넓히고, 이 가운데 경문에서 출제한 시제로 주제를 좁혀 논의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854).

** 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bacaaltto@korea.ac.kr

보았다. 이를 통해 당대의 현안, 군주의 관심사, 학술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어제에서는 시관지제(試官之題)에 비해 경문의 인용 비율이 다소 떨어 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절일제에서는 순조대 이후로 경학 관련 시제가 급증하였다. 이는 영조대 이후부터 절일제에서 어제 출 제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서(史書)에서 주로 출제하던 것을 경문으로 범위를 넓 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문에서 출제된 어제들은 과거 시험을 대비하며 학업에 몰두하는 성균관 유 생과 방외 유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고 이들을 권면하는 데 적합한 시제들 이 많았다. 다만 그 시취 목적에 따라 다른 출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정조대 의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했던 친시에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위 주로 하여 문신들의 해이해지는 기강을 바로잡고 수준을 제고하는 도구로 삼았 다. 또한 문신들의 제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실력을 다시 점검 해 보라는 차원에서 개시(更試)의 시제로 자주 출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주 는 개인 학자로서의 뛰어난 식견과 열정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당대 학술적 관심사를 시제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어제(御題), 과거(科舉), 시제(試題), 경문(經文), 정조(正祖), 유생 응제 (儒生應製), 초계문신(抄啓文臣), 친시(親試)

1. 들어가며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 시제들은 대부분 시관[上試官]에 의해 출제되었다. 이들은 종3품 이하~종2품 이상의 문신들로, 자신들 또한 험난한 과거 시험의 여정을 밟아 왔으며 임금에 의해 뛰어난 문재를 인정받은 자들이라 하겠다. 시관들은 각 시험의 단계에 맞는 적절한 문제를 찾아 역사, 경문, 유명 시문 등에서 골고루 시제를 출제하였으며, 이러한 시 제들은 방목이나 과문집 등 과시(科試) 관련 서적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임금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¹⁾ 첫 번째는 유생 응제로, 성균관이나 사학, 또는 향교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거재 유생, 또는 외방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특별 시험이다. 이 시험들은 장학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여기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과거 시험에 직부회시(直赴會試) 하는 등의 특전이 있었다. 두 번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 초계문신으로 발탁된 이들에게 실시한 과시(課試) 등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들은 관리로 임명된 문신들이 해이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권학 및 재교육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승진을 시켜주었으며, 임금이 하사품을 내려주곤 하였다. 반면 제술과 강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꼴찌를 차지하는 자는 금추(禁推)하였다.²⁾

이처럼 조선 시대에는 관리 선발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 시험과 승진 시험 등 여러 종류의 시험에서 수많은 시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문에서 출제된 시제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³⁾ 반면, 시관이 출제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출제한 어제(御題)에 대해서는 정조의 어제 출제 양상을 도출한 연구⁴⁾가 거의 유일하다. 이

1) 관리 선발 과시의 최종시인 전시(殿試)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친립하게 되어 있으며, 정시(庭試)나 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의 별시에서도 폐초한 시관이 명을 어겨 나오지 않았을 때 임금이 직접 문제를 출제했던 경우가 있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시관지제(試官之題)와의 차이점을 주안으로 삼기 위해, 전시에서 출제된 어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實齋日乘』, 1794년 4월 14일 기사, “都計畫居首及連三次居首者陞敍，製之三次居末，講之三次居不者禁推。”

3) 경문에서 출제된 과거 시험 시제에 관한 연구는 윤선영, 「사서오경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 소고」(『동방한문학』 96집, 2023); 「經義를 주제로 한 책문 소고」(『經學』 6집, 2023); 「조선시대 과거 잡·명·송(箴銘頌) 시제 연구 -경문에서 인용한 시제를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96집, 2024) 등이 있다.

4)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규장각』 48집, 2016). 그는 이 논문에서 『임현제총』에 수록된 정조의 어제를 문체별로 정리하고, 정조대 출제 어제

는 정조대에 초계문신제가 시행되면서 어제 출제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정조의 어제만을 수록한 『임현제총(臨軒題叢)』이 간행되는 등 연구 자료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제의 출제는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영조대에 성균관 절일제(節日製)의 시행을 늘리면서 이 때를 기점으로 하여 어제 출제의 빈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정조대 이후에 출제된 어제들이 각종 자료에 수록되어 있어 그 대개와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조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조선 후기로 그 범위를 넓혀 왕이 직접 출제한 어제들의 일면을 고찰해 보도록 하되, 이 가운데 경문에서 출제한 시제로 주제를 좁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의 현안, 군주의 관심사, 학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조선 후기 어제 수록 자료와 시제 소고

2-1. 수록 자료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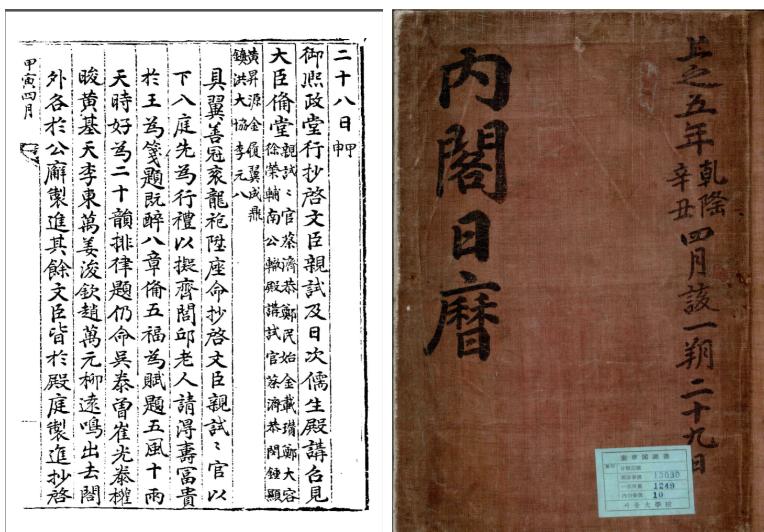
본격적으로 어제 시제들을 탐색하기에 앞서, 어제를 수록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어제는 자신의 과작을 수록한 개인 문집⁶⁾,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사

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선이, 「正祖代抄啓文臣 製述과 그 의미에 대하여 – 試題 출제 경향과 문체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한문학보』 52집, 2025). 그는 이 논문에서 『內閣日曆』에 수록된 정조대 초계문신 제술에 출제된 시제들과 문체 정책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5) 박현순, 위 논문, 159-160면 참고.

6) 초계문신으로 활약한 문신들의 개인 문집에 당시의 어제와 자신의 과작을 수록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이좌(柳台佐, 1763~1837)의 『학서집(鶴棲集)』, 김재찬(金載贊, 1746-1827)의 『해석유고(海石遺稿)』, 서유구(徐有渠, 1764-

료, 임금의 명으로 편찬되었거나 유생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과문집, 초계문신제의 실상을 기록한 일기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출제의 기본적인 실상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조선 후기 출제 어제를 보다 긴밀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진 1〉『日省錄』(좌)과 『內閣日曆』(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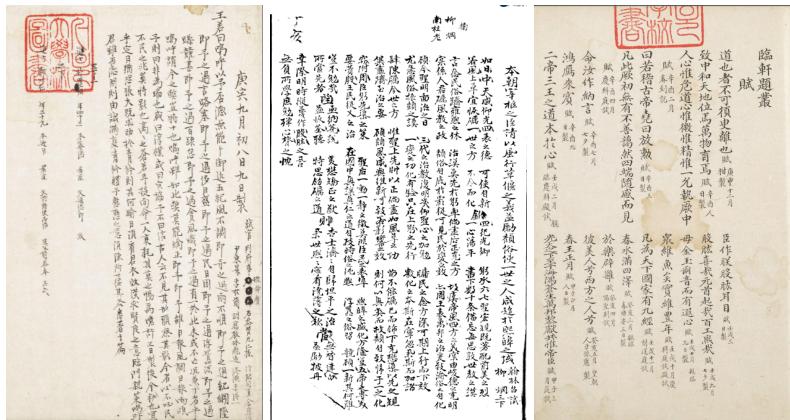
『日省錄』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151년간, 조정과 내외의 신하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체의 연대기이다. 이는 정조의 세손 시절에 시작되어 즉위 후에는 규장각 각신들에게 편찬하도록 하였다. 총 2392책으로, 현재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각일력』은 1779년(정조 3) 1월부터 1883년(고종 20) 2월에 이

1845)의 『풍석전집(楓石全集)』 등을 들 수 있다.

르기까지 규장각의 일지로, 총 1,245책이다. 규장각의 이문원(擣文院)에 입직한 각신들이 『승정원일기』의 예에 따라 매일 기록하고, 검서관이 편사(編寫)해 완성하였다. 이 책들은 영조대부터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기간에 걸쳐 국정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제를 도출하는데 좋은 사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삼일제(三日製), 구일제(九日製) 등의 절일제(節日製)나 과거 시험 응시생들의 수험서로 만들어진 과문집, 임금의 명으로 편찬한 관찬 시제집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2〉 『庚寅九日製科作』(좌), 『科儻』(중), 『臨軒題叢(규장각본)』(우)

『경인구일제과작』(奎9895)은 1770년(영조 46) 경인년 9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시행된 구일제를 기록한 책이다. 왕이 친히 책제(策題)를 내어 시험하였으며, 이 시험에서 급제한 당시 43세였던 朴道翔(三中)과 39세였던 鄭國仁(三下)의 과작이 수록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같은 기관 소장인 『경인칠월제과작(庚寅七月製科作)』(奎9873)과 함께 영조대 절일제의 일면과 어제를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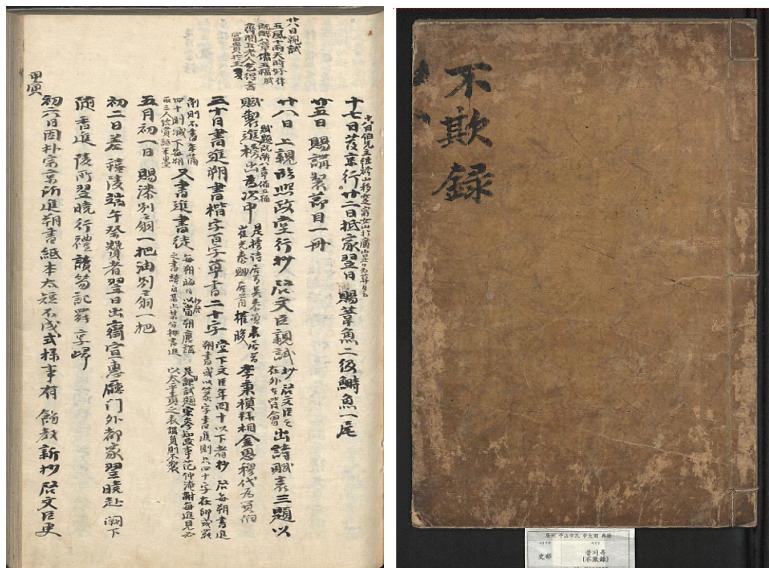
『과려(科麗)』는 숙종 이후 각종 시험에 표·전·명 등 변례문으로 출제한 시제를 수록한 시제집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한古朝 26-15)되어 있다. 동일한 서명으로 여러 판본이 있으나, 각 판본마다 대상으로 하는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이를 아울러 살펴보면 숙종~순조 대까지의 시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정조대 이전 자료의 경우, 실록 등에 어제를 내린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어떠한 어제를 출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 수록된 시제를 통해 당대의 절일제와 한림소시(翰林召試) 등에 출제된 어제를 살펴볼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임현제총』은 조선 후기 과거 시험에서 어제 및 시관지제를 기록해 놓은 시제집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본(奎 11437)과 국립중앙도서관 본(한古朝25-41)이 있다. 규장각본은 총 3책으로 1책은 순조대인 1800-1830년, 2책은 1827-1828년, 3책은 1855년(철종 6)에 출제된 시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책은 어제를, 2책과 3책은 어제와 시관지제가 섞여 수록되어 있다. 국중본은 정조대인 1776-1798년까지의 어제를 수록하였으며, 초서로 기록한 후사본이다. 이 책들은 시제의 기록과 후대 시험에서의 중복 출제를 막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편찬된 책으로, 18세기 후반 이후 어제가 나름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책들이라 하겠다.⁷⁾

마지막으로 초계문신으로 활약했던 문신들의 일기류 서적들이다. 초계문신은 정조대에 총 10회에 걸쳐 142명, 현종대에 총 2회에 걸쳐 56 명 등 총 198명이 선발되었다. 이 가운데 1794년에 선발된 조선 후기 문신인 신현(申鉉, 1764-1827)을 비롯하여 당시의 초계문신들이 작성

7) 『임현제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현순, 위 논문 참고.

한 일기를 통해 당대 치열했던 군신간 학술 활동과 친시 시제 등을 볼 수 있다.



〈사진 3〉『實齋日乘』(좌)과 『不欺錄』(우)

『실재일승』은 신현이 1784(정조 8)부터 1807년(순조 7)에 이르기 까지의 본인의 관직과 일상 생활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총 5권 중 4권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강원(講員)으로 선발된 신현은 제술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정조에게 거듭 칭찬을 받는 등 그의 활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정조 및 순조가 출제했던 어제뿐만 아니라, 일반 과문집에서 거의 수록하지 않은 향시나 승보시 등의 시제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다. 특히 어제의 경우 『日省錄』에 수록되지 않은 시제들도 기록하고 있어 시제집으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

『불기록』은 신현을 비롯한 초계문신 7인(權峻·金啓溫·金近淳·曹錫中·洪奭周·黃基天)이 1798년(정조 22) 왕명에 따라 한 달 동안 작성한 독서록이다. 정조는 주자소(鑄字所)에서 입직 중이던 초계문신에게 공책을 내리며 한 달 동안 각자 읽은 책을 기록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에 신현을 비롯한 초계문신은 자신들이 읽은 책의 제목과 범위, 독서 방식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초계문신으로서 응한 제술(製述)과 강경(講經) 시험 및 주자소에서 편찬한 서적의 편집·교정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도 기록했다. 이 또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실재일승』과 함께 정조대 초계문신 친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⁸⁾

2-2. 조선 후기 출제 어제의 일면모

이상에서 조선 후기 어제가 수록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현재로서는 역시나 정조의 호학적 면모와 활발한 서적 간행 등으로 인해 정조대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초계문신을 잠시나마 부활시켰던 현종대의 경우 어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자료군의 시기와 상락에 있어 고르지 않은 한계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한 어제를 대상으로 하여, 이 시제들이 시관지제와 차별화되는 지점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문체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어제의 경우 임금이 직접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⁹⁾ 시관지제의 경우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정해진 과목에 나름의 다양성이 있었으나, 대부

8) 『불기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은진, 「『不欺錄』을 통해 본 정조대抄啓文臣의 활동」(『장서각』 50호, 2023) 참고.

9) 『승정원일기』, 1728년(영조 4), 5월 29일 기사, “上曰，書題，論·賦·表·箴·銘·頌而已乎？光佐曰，亦有殿策·殿論矣。上曰，然矣。殿策則如此科舉，不出之矣。光佐曰，古規書題，名爲條列入啓矣，今亦依此爲之乎？上曰，御題，無此規矣。”

분 보는 과목이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식년 문과 전시의 경우 대책·표(表)·전(箋)·조(詔)·제(制)·논(論)·부(賦)·잠(箴)·명(銘)·송(頌) 가운데 한 과목에서 고시되는 것이 원칙¹⁰⁾이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시무를 논하는 대책에서, 중기 이후부터는 문제를 시험하는 표와 부, 명 등의 사과(詞科)에서 대부분이 출제되었다.¹¹⁾ 이는 조선 후기 과거 응시자 수가 현격히 늘어나면서 채점의 편리성과 촉박했던 시험 일정 등이 빚어낸 결과였다.

물론 어제의 경우도 유생 응제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시관지재와 마찬가지로 부, 표에서 대부분 출제되었다. 그러나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전(箋)을 비롯하여 교서(敎書), 서(序), 사(詞), 기(記), 설(說), 변(辨), 조, 책략(策略) 등 그 문제가 훨씬 다양하였다. 기본적인 학문 성취도 및 문장 실력을 평가하는 것과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각종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으로 그 시취(試取) 목적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당대의 기념할 만한 행사 및 군주 개인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시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1794년(정조 18) 11월 23일 초계 문신 친시에서는 <본조의 내각에서 『주서백선』을 새로 간인하여 올리다[本朝內閣進新印朱書百選]>라는 시제로 전(箋)으로 시험하였으며¹²⁾, 1797년(정조 21) 2월 10일에는 <본조 주자소에서 『향음의식』과 『향약 조례』를 올리다[本朝鑄字所進鄉飲儀式鄉約條例]>를 시제로 하여 역시 전(箋)으로 시험하였다.¹³⁾ 정조는 이처럼 자신이 편찬을 명한 책이 간

10) 『續大典』, 『禮典·諸科』〈式年文科殿試〉

11) 식년 문과 전시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대부분 대책이 출제되었다가 순조-현종 연간에는 잠·명·송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김광년, 「조선 과시의 잠·명·송 연구」(『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196-198 면 참고.

12) 『實齋日乘』, 1794년(정조 18) 11월 23일 기사.

행될 때 친시의 시제로 출제하여 이를 기념하고 문신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조 자신이 애연가였던 만큼, 1796년(정조 20) 11월 18일에는 담배〔南靈〕를 주제로 하여 책문을 지어 올릴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¹⁴⁾ 대부분의 책문에서 환곡과 군향의 폐단을 없애려는 방법을 찾거나〔還餉策, 1795년 10월 21일, 친시〕¹⁵⁾, 사치를 억제하는 방안〔抑奢侈, 1795년 11월 27일, 과시〕¹⁶⁾을 강구하는 등 시무와 현안을 주요 소재로 삼은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나 토산물을 주제’로 한 시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시관지제를 비롯하여 많은 어제에서 훌륭한 군신 및 관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과 관련한 문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고사에서 인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794년 9월 5일에 치러진 친시에서는 <공이 급히 서둘 것이라 여겼는데 공이 오기를 느릿느릿 하였다.〔謂公暨暨, 公來于于〕>를 주제로 하여 부(賦)로 문제가 출제되었다.¹⁷⁾ 이 구절은 송나라 인종(仁宗) 때 익주(益州)에 도둑이 창궐하여 민심이 혼흉하자 조정에서 문무를 겸비한 장방평(張方平)을 익주 자사로 보내 진무(鎮撫)하게 하였는데, 그가 무력보다 법과 질서를 존중토록 하여 민심을 안정시켰다고 한데서 유래한다.¹⁸⁾

그러나 초계문신 친시에서는 조선 시대의 인물을 주제로 하여 출제한 문제들이 종종 있었다. 1796년(정조 20) 11월 30일에는 <이 학사의 나

13) 『實齋日乘』, 1797년(정조 21) 2월 10일 기사.

14) 『日省錄』, 1796년(정조 20) 11월 18일 기사.

15) 『實齋日乘』, 1795년(정조 19) 10월 21일 기사.

16) 『實齋日乘』, 1795년(정조 19) 11월 27일 기사.

17) 『日省錄』, 1794년(정조 18) 9월 5일 기사.

18) 『古文眞寶後集』 권7, 蘇洵, 「張益州畫像記」

막신[李學土木屐]을 주제로 명(銘)을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 이 학사는 당시 규장각 각신이었던 이만수(李晚秀, 1752-1820)로, 그가 나막신 신는 것을 좋아하여 정조가 나막신을 하사한 적이 있어서 이를 시제로 출제한 것이다.¹⁹⁾

1797년(정조 21) 10월 22일에는 <본조의 도총제 황형이 '나라가 위급할 때 황형이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유한 것을 사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으라.>[擬本朝都摠制黃衡謝於御樓之辰諭以黃衡眠起矣]"로 전(箋)을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²⁰⁾ 황형(黃衡, 1459-1520)은 조선 중종 때의 무신으로, 중종 5년 삼포왜란(三浦倭亂) 때 전라좌도 방어사가 되어 제포(薺浦)에서 크게 왜적을 무찌른 공이 있다. 이처럼 과거 시험 시제로 특정한 인물을 내세우는 방식은, 17세기 이후로 정사에 입전되기 어려운 불우한 인물들의 인정 기술을 산문에 적극적으로 기재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²¹⁾

이밖에 순조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체에서 <동정귤(洞庭橘)>을 시제로 출제²²⁾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토산물인 귤은 금귤(金橘), 산귤(山橘), 동정귤, 왜귤(倭橘), 청귤(青橘)의 다섯 종류가 있다. 동정귤은 이 중 품질이 뛰어난 귤을 일컫는 명칭으로, 조선시대에는 종묘 친신(薦新)과 공식 의례에 사용된 귀한 과일이었다. 매년 겨울 제주에서 귤이 진상될 때를 기념하여 황감체를 설행하고, 정조 또한 입직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에서 <귤책(橘策)>이라는 시제를 출제²³⁾할 정도로 당시 귤이라는 물산은 단순한 과일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짐작해

19) 『實齋日乘』, 1796년(정조 20) 11월 30일 기사.

20) 『日省錄』, 1797년(정조 21) 10월 22일 기사.

21)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소명출판, 2001), 171면 참고.

22) 『日省錄』, 1807년(순조 7) 12월 6일 기사.

23) 『冷齋集』 권11, 「橘策【禁直諸臣比較製進】」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신뿐만 아니라 무신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조선의 인물, 조선의 토산물 등을 시제로 출제하여 문신들에게 애국과 충성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3. 경학 관련 어제의 출제 양상과 특징 - 관리 선발 과시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3-1. 경학 관련 어제의 대개와 출제 양상

본 단락에서는 어제로 출제된 다양한 시제들 가운데 경학을 주제로 한 시제를 추출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당대 국왕들의 관심사와 학문적 동향 등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또한 관리 선발 과시에서 자주 출제된 경학 관련 시제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숙종대 이전에는 출제 어제를 기록해 준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구당서(舊唐書)』, 『한서(漢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역사서에서 출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조대 중반기인 1750년(영조 26) 이후부터 절일제에 임금이 직접 친림하면서 어제 출제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문에서 출제한 어제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어제로 출제된 경학 관련 시제는 19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필자가 미처 수집하지 못한 시제를 합치면 그 수치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한 표는 지면의 한계상 부록에 싣는 것으로 대체한다.

경학 관련 어제는 영조대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정조대부터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하였고, 순조대 이후에는 절일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사서보다 삼경에서 훨씬 많이 출제되

었으며, 『시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순조대 이후로 기존 시제 답습이 만연화하는 과정에서 『춘추』, 『주역』 등 까다로운 서적들이 하나씩 배제되며 생긴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정조대에는 『춘추』에서도 나름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관리 선발 과시인 오경의(五經義)에서 『예기』·『시경』·『서경』·『주역』의 순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정조대 이후 오경의에서 폐지된 『춘추』가 영조대부터 사실상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²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빈출 편장의 경우는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오경의에서 출제가 집중된 『시경』의 「문왕」과 「칠월」, 「천보」 등과 『서경』의 「홍범」과 「우공」, 『예기』·『월령』 등의 편에서 어제 역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시경』의 경우, 대아(大雅)에 국한되지 않고 풍(風)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등 출제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절일제에서는 시종(試種)과 연관되는 시제, 예컨대 칠석제의 경우 「빈풍·칠월」의 '七月流火', '七月在野', 구일제의 경우 '九月築場圃', '九月授衣' 등이 출제되는 등 동일한 편에서도 출제의 폭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 또한 보인다.

24) 오경의 과목의 시제 출제 양상에 대한 설명은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남명학연구』 67집, 2020) 참고.

	시관지제			어제	
시경	「小雅天保」	「豳風·七月」	「大雅文王」	「豳風·七月」	「小雅天保」「大雅·文王」
비고 - 어제에서 『서경』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출제, 「豳風·七月」에서 압도적 출제					
서경	「洪範」	「禹貢」	「益稷」	「堯典」	「禹貢」
비고 - 시관지제에서는 「홍범」에서 압도적 출제, 어제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					
예기	「樂忌」	「月令」	「禮運」	「月令」	「樂忌」
비고 - 시관지제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 어제에서는 낮은 비율로 출제					
주역	「繫辭(上)」	「繫辭(下)」	「乾卦」	「泰卦」	「說卦傳」
비고 - 어제에서는 태파, 설파전 등에서 출제, 시관지제보다 높은 비율로 출제					

〈표1〉 시관지제(오경의)와 어제의 사경(『시』·『서경』·『예기』·『주역』) 내
빈출 편장 비교

중복 출제 경향에 대해 언급해 보자면, 정조대 이전까지는 중복으로 출제된 어제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1795년(정조 19) 11월 16일에 초계문신 친시에서 오연율시로 출제된 〈선우가 밤 중에 도망가다[單于夜遁逃]〉²⁵⁾는 당(唐)나라 중기 시인인 노륜(盧綸, 739-799)의 변방의 풍경을 읊은 「새하곡(塞下曲)」의 한 구절이다. 이 시제는 다음 해인 1796년(정조 20) 11월 17일에 동일하게 친시로 출제²⁶⁾되었으나, 이 때는 칠언사언율시로 고시되었다. 이처럼 몇 안 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중복 출제한 어제가 드물었으나, 순조대 이후부터 절일제에서 중복 출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시경』『천보』의 〈하늘이 너를 보호하여 안정시키니 또한 매우 공고하였도다[天保定爾, 亦孔之固]〉라는 시제는 1807년(순조 7) 춘도기에서 출제된 뒤 3년만인 1810년(순조 10) 칠석제에서 출제되었고, 『맹자』『공손추(상)』의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我善養吾浩然之氣]〉는 시제는 1813년(순조 13) 칠석제에서 출제된 뒤 1년도 채 안 되어 1814년(순조 14) 삼일제에서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이는 중복

25) 『일성록』, 1795년(정조 19) 11월 16일 기사.

26) 『일성록』, 1796년(정조 20) 11월 17일 기사.

출제를 염격히 제한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지²⁷⁾가 당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해이해지는 일면²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순조대 이후의 중복 출제 시제 증가는 관리 선발 과시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양상이어서, 정조대의 시제 보존을 목적으로 간행했던 시제집이 후대 군주 및 시관에게 좋은 참고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3-2. 경학 관련 어제를 통해 본 국왕들의 관심사

(1) 성균관 유생의 학업 성취와 경계

성균관에 어제(御題)를 내려 읊부를 짓게 하고 대제학 정사룡(鄭士龍) 등에게 명하여 제생을 시험하게 하였으며, 도승지를 보내어 선온(宣餗)하고 아울러 유생들에게도 음식을 내리게 했다. 이어서 전교하였다.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요 현사(賢士)가 거쳐 나오는 곳인데 근래에는 날로 문란해지고 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고무진작하지 못한 결과이기는 하나 또한 제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러니 너희 제생들은 학업에 힘써 국가에서 배양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²⁹⁾

27) 『일성록』, 1795년(정조 19), 11월 17일 기사에 “대파나 소과 시장(試場)에서는 어제(御題)에 이미 나왔던 것을 시제로 다시 내지 말며,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을 경우 정원과 내각이 칠추(察推)하고 그 방목을 시행하지 말도록 해서 어제의 사체(事體)를 높이라는 내용도 글로 써서 빈청(賓廳), 예조, 성균관에 걸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

28) 『순조실록』 1831년(순조 31), 12월 14일 기사를 살펴보면 통독(通讀)의 제초(製抄) 때 어제(御題)를 피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사성을 좌직할 것을 명하는 등 시관이 어제를 중복 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던 듯하다. 다만 어제간의 중복 출제는 사실상 금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9) 『명종실록』, 1554년(명종 9) 5월 3일 기사, “下御題律賦于成均館, 命大提學鄭士龍等, 往試諸生, 遣都承旨宣餗, 幷餽儒生等. 仍傳曰, 學校, 風化之源, 賢士之關, 而近來日益頹靡. 是雖在上之人, 不能鼓舞振作之所致, 亦由諸生, 惰於講學, 良用寒心. 爾諸生, 勉勵學業, 以副國家儲養之意.”

위는 명종이 성균관에 어제를 써 내리며 전교한 내용을 담은 『명종실록』 1554년(명종 9) 기사의 일부이다. 그는 성균관에 대해 ‘풍화의 근원이며 현사가 거쳐 나오는 곳’이라 표현하고, 근래에 날로 문란해지고 있는 기강과 학업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힘써 학업에 정진하여 국가의 뜻에 부응해야 마땅함을 말하였다. 국가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인재라는 점에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거는 군주들의 기대는 실로 높았음을 볼 수 있다.

정조는 1790년(정조 4)에 친립한 삼일제에서 <왕이 호경에서 대하도다(王配于京)>라는 시제로 송(頌)의 문체로 시험하였다. 이는 『시경』 「대아·하무(下武)」의 ‘세 임금이 하늘에 계시거늘, 왕이 호경(鎬京)에서 대하도다.[三后在天 王配于京]’에서 출제한 것이다. 주 무왕(武王) 이 태왕(太王) · 왕계(王季) · 문왕(文王) 세 임금의 지위를 계승하여 주 나라의 서울인 호경(鎬京)에서 세 임금을 대한다는 뜻으로, 무왕이 세 임금의 전통을 이어 천하를 소유한 것을 찬미한 시이다. 이는 정조 즉위 초반에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조의 바람과는 달리 성균관 유생들이 지어 올린 과작은 정조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듯하다. 정조는 “성균관 유생들이 삼일제에서 지어 올린 과작이 전부 볼 것이 없다.”고 하며 탄식하였고, 우의정인 이휘지(李徽之)는 어제는 지극히 좋으나 나이가 어린 유생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며 유생들을 대변하였다.³⁰⁾ 어제의 수준이 너무 높아 유생들이 답을 적어내기 힘들다는 의견은 영조대에도 있었으

30) 『승정원일기』, 1790년(정조 4) 9월 10일 기사, “今番科題，卽三製所出，而三製科作，專不合意，故今番更出，以試其間多士之工夫與否。今見諸試券，別無開眼者，良可艱也。徽之曰，御題極好，而年少儒士輩，必製之爲難矣。”

나³¹⁾ 군주들은 오히려 유생들이 학업을 게을리하는 것을 늘 경계하였다.

순조 또한 1811년(순조 11) 일사유생전강 대신 실행한 제술에서 어제로 〈넓고 큰 저 은하가 밝게 하늘에 둘러 있네.[倬彼雲漢 昭回于天]〉라는 시체를 출제하였다. 이 구절은 『시경』「대아·운한(雲漢)」에 나오는 것으로 가뭄을 걱정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유생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지 염려하기도 하였다.³²⁾ 순조대 이후로는 절일제에서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유생들의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춘추』에서 출제된 문제를 들 수 있다. 1831년(순조 31) 9월에 치러진 칠석제에서 순조는 〈주나라 군신(群臣)이 겹욕(鄭廓)에 구정(九鼎)을 안치할 적에 점사(占辭)에서 '800년 30대를 누릴 것이다.'라고 한 것을 하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으라[擬周群臣賀定鼎鄭廓卜年八百世三十]는 어제를 표의 문체로 써낼 것을 명하였다. 이는 『춘추좌전』 선공(宣公) 3년 조에서, “성왕이 겹욕에 도읍을 정하여 구정을 안치하고 점을 쳐보매, 세대 수는 삼십 세요 연수는 칠백 년이었으니, 이게 바로 하늘이 명한 것이다.[成王定鼎于鄭廓 卜世三十 卜年七百 天所命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겹욕은 성왕이 주나라의 도읍으로 정한 곳으로, 실제 주나라는 800여 년 동안 존속하였으므로, 경문의 700년을 800년으로 바꾸어 시체에 반영하였다.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춘추』는 『속대전』에서 폐지를 명한 이후에 오경의 과목에서 자취를 감추었기에 정조대 이후 유생들 가운데 『춘

31) 『승정원일기』, 1753년(영조 29) 10월 22일 기사, “試題多出隱僻文。頃者庭試御題，不但試官無知者，雖以洪良漢之博洽，亦有所不解，儒生豈不難之乎？縱知之，顧何以盡其才乎？上笑曰，儒生自有知者矣。”

32) 『승정원일기』, 1811년(순조 11) 4월 4일 기사, “上曰，御題之倬彼雲漢昭回于天，即憫旱之意也，儒生能認之乎？文會曰，當此旱時，特揭此題，爲儒生者，孰不仰認殿下憫旱之念，憧憧於夙宵乎？”

추』를 열심히 학습하고 이 책에 정통한 자들은 손꼽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평소 『춘추』를 열독하였으며 이 책을 새로 간행한 후 완독한 기쁨을 여러 신하들과 함께하였다.³³⁾ 순조 또한 유생들을 대상으로 『춘추』 경문을 바꾸어 출제함으로써 당대 유생들의 수준을 확실히 점검하고 기초가 튼튼한 자들을 변별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 『주역』에서 출제된 문제들도 예시로 들 수 있다. 1811년(순조 11) 1월에 치러진 인일제에서는 <손에 『주역』 한 책을 가지고서 성명(性命)의 이치에 침잠하노라니 명경(明鏡)과 대하(大河)처럼 가슴이 확 트였다.[手持一卷易況潛於性明(命)之理胸中豁然如明鏡大河])라는 어제가 부제(賦題)로 출제되었다. 이는 「설쾌전(說卦傳)」의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은 뜻은 장차 성명의 이치를 따르기 위해서였다.[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에서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문제로 만든 것이다. 이후에도 1844년(현종 1)의 인일제에서 <성인이 남면하여 천하의 밝은 곳을 다스린다.[聖人南面而聽天下]>라는 시제가, 1870년(고종 7)의 칠석제에서 <만물이 기뻐하는 바이다.[萬物之所說]>라는 시제가 「설쾌전」에서 출제되었다. 오경의 과목에서 『주역』은 낮은 빈도로 출제되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계사전」과 건(乾)괘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설쾌전」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었다.

이처럼 관리 선발 과시의 대상 과목에서 폐지되거나 기출한 적이 없는 편장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성균관 유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좋은 수단임과 동시에 그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당대 군주의 경계를 내비치는 도구였다. 반면 외방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제에서는 대부분 기출된 문제에서 평이한 경문들을 출제하였으며, 지역 및 시의성으로 인해 간파될 만한 시제들이 대거 출제되었다. 예컨대 1794년(정조 18) 4월 제주

33) 『홍재전서』 권7, 「春秋完讀日, 慈宮設饌識喜, 喰示諸臣. 【并小序】」

유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시험에서 『맹자』「진심(상)」의 <바다를 본 자들에겐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다[觀於海者難爲水]〉가 논(論)으로, 『서경』「우공」의 <귤과 유자를 싸두다[厥包橘柚]〉가 시(詩)로 출제되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과 외방 유생들의 격려라는 서로 다른 시취 목적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초계문신들의 학문 연마와 기본기 점검

정조는 즉위 5년차인 1781년부터 초계문신제를 시행하며, 총 10회에 걸쳐 142명의 문신을 선발하여 이들을 재교육하고 문풍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그가 초계문신제를 시행하고자 한 목적은 정조대 초계문신인 신현의 일기 『실재일승』에서도 그 일면이 드러난다.

초계문신의 규례는 今上 5년인 신축년(1781년, 정조 5)부터 시작되었다. 임금께서는 연소한 문신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공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는 다시는 학문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옛날 학교를 설치했던 것을 본받아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로 삼았다. …이에 廟堂에 명하여 문신 槐院分館중에 參上과 參外를 막론하고 37세 이하까지만 뽑아서 아뢴 뒤 內閣에 소속시키고, 講製試官은 각신 중에서 通政大夫 이상을 임명하여 매달 經史를 강하고 열흘마다 程文으로 시험하여 월말에 모아서 평가하고 勤慢을 따져서 상벌을 주게 했다.³⁴⁾

이처럼 정조는 나이가 어린 문신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학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위기를 성토하며 매달 이들을 시험하여 성적에 따라

34) 『實齋日乘』, 1794년 4월 14일 기사, “抄啓之規，始自今上五年辛丑。上以年少文臣，纔決科第，便謂能事已畢，不復從事於文字，欲倣古設教，以爲作成之道。…於是命廟堂就文臣槐院分館中，勿論參上參外，限三十七歲以下抄啓，屬之內閣，而講製試官，則以閣臣中通政以上爲之，月講經史，旬試程文，月終則聚而考之，較勤慢行賞罰。”

상별을 내릴 것을 명하였다. 이에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자들은 강원(講員)과 제원(製員)으로 나누어 각기 잘하는 부분으로 응시하는데, 제원들은 매달 초하루마다 어제로 내는 친시와 시관이 내는 과시(課試)를 보아야 했다.³⁵⁾

초계문신을 향한 정조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그가 직접 출제한 문제들 또한 평이하지 않았다. 이는 경문 관련 시제 또한 마찬가지로, 『주례』나 『의례』 등 이전 시험에서 기출되지 않았던 구문을 위주로 출제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798년(정조 22) 8월에 출제된 친시 시제는 <소가 소를 머리에 이다[牛戴牛]>라는 것으로, 이는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궁인(弓人)에 나오는 말이다. 「궁인」에서는 ‘뿔의 길이가 2척 5촌에 삼색의 결이 고른 것을 우대우라고 한다.[角長二尺有五寸, 三色不失理 謂之牛戴牛]’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현은 ‘이런 훌륭한 뿐의 가격은 소 한 마리의 값에 버금가기 때문에 소의 머리 위에 또 한 마리의 소를 이고 있는 것이나 같다.’라고 하였다.

1794년(정조 18) 11월의 친시에서는 <주나라 소신이, 누구를 잉작자(媵爵者)로 삼고 누구를 치자로 삼을지를 청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지으라.[擬周小臣請媵者致者]>는 시제가 표의 문제로 출제되었다. 여러 문신이 시제를 해석하지 못하였고 경학에 능했던 신현조차 이 구절이 『의례』에 나오는 것임을 알 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내각으로 나가서 제목의 해석을 본 뒤에 다시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³⁶⁾ 정조는 초계문신들의 거조가 참으로 놀랍다고 한탄하며³⁷⁾ 과강(課講) 또한 다시 할 것

35) 『實齋日乘』, 같은 날 기사, “至是又分講製, 使各以所長應試, 而製則每朔親試一次【御題親試】】課試一次。【試官出題】”

36) 『實齋日乘』, 1794년 11월 18일 기사, “十八日, 更試題周小臣請媵者致者表, 懸題後, 教曰, 知其解題乎? 諸文臣皆曰, 不知也. 上曰, 此是經書題, 而名以文臣不知乎? 更歷問之, 約對曰, 似是儀禮, 未能詳記矣. 上曰, “儀禮則儀禮也. 出就內閣, 考見解題後製進可也.”

을 명하였고, 다음날 문신들은 『대학』의 「聽訟章」을 강하였다.³⁸⁾ 사서 오경에 더하여 삼례(三禮)로 일컫는 예서까지, 문신들이 익혀야 할 문장의 범위가 제법 넓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초계문신들은 매번 군주의 평가를 감내해야 했다. 하루는 정조가 친시를 행하고 문신들이 지어 올린 과작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근래 너희들은 드나들면서 세간의 소식을 잘 탐지하는 것만 좋아하고 심지어 경강(經講)과 제술은 전혀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며 “올해 이미 시험을 본 친시와 과시는 모두 삭제하고, 오늘 낸 시제는 1월 과시를 다시 시험하는 것이니, 반드시 잘 지어 올리되 또 이전과 같다면 삭과(削科)도 불가하지 않을 것이다.”³⁹⁾라고 하였다. 문신들의 문장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간 봤던 시험을 전부 무효화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결국 문신들에게 <명덕(明德)>을 주제로 하여 의(疑)의 문체로 재시험을 볼 것을 명하게 된다.

명덕은 『대학』 경1장의 삼강령 중 하나인 명명덕(明明德)을 일컫는 것으로, 심(心)과 성(性)의 분속, 주리(主理)와 주기(主氣) 등 이와 관련한 논의는 조선시대 호락논쟁의 주요 주제였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 관리 선발 과시에서부터 과거제 폐지 이후 20세기 초의 경의문대(經義問對)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출제되었던 문제였다.⁴⁰⁾ 정조대에도 이미 식년감시 초기에서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의 시제와 친시의 시제

37) 『일성록』, 같은 날 기사, “以擬周小臣請賸者致者爲表題, 限次對, 諸文臣不知解題, 不卽趁限製進. 教曰, 抄啓文臣舉措駭然, 今日親試勿施, 更令明日待令. 課講亦令明日待令.”

38) 『實齋日乘』, 1794년 11월 19일 기사.

39) 『實齋日乘』, 1796년 11월 21일 기사, “近來爾等好出入善探世間消息, 至於講製, 則全不成樣. (중략) 今年親課試之已試者, 一竝削之, 以今日所出之題, 作正月更試, 必善作以進, 而若復如前, 則削科亦無不可.”

40) 명덕과 관련한 경의문대에 대해서는, 윤선영, 「과거제 폐지 이후의 경학 시험과 출제 문제 고찰 - 經義問對를 중심으로 -」(『동아한학연구』 20집, 2025), 59-60면 참고.

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노라. 『대학』의 명덕은 마음인가, 성품인가? 마음으로 보자면 주자가 명덕을 풀이한 것이니 이는 『맹자』 「진심」장의 주와 같다. 성품으로 보자면 전 1장에서 하늘의 밝은 명(天之明命)이라고 한 것이 곧 이른 바 명덕이니, 『중용』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같다. 두 설 중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명확한 논의를 듣고 싶다.⁴¹⁾

명덕(明德)은 마음인가, 성품인가? 마음이라면 대인(大人)의 마음인가, 적자(赤子)의 마음인가? 그리고 성품이라면 본연(本然)의 성품인가, 기질(氣質)의 성품인가? 만약 본연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생(生)의 본능을 성품이라고 하였으며, 만약 기질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품이라고 말했는가? 적자의 마음과 대인의 마음이 순수하게 선(善)하다면 마음속의 악(惡)함은 어느 마음에 소속되어야 합당한가? 체(體)는 본래 허령(虛靈)한 것이고 명(明)은 애당초 지각(知覺)이니, 덕(德) 또한 마음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덕(德) 자를 놓았으므로 문득 단독으로 마음이라고만 일컫는 것은 불가하다. 옥계 노씨(玉溪盧氏)가 명덕은 단지 본심(本心)이라고 한 비유에 대해 근세(近世)의 유자(儒者)로 이 문성(李文成 - 李珥) 같은 이는 매우 의미 있게 여겼으니, 이 점이 바로 이 문성의 탁월한 견해이다. 그러니 본심(本心)이 명덕이 되는 까닭과 명덕이 독립적으로 심이나 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모두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하여 가리키며 진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하지 않은 것을 성(性)이라 하고 이미 발한 것을 정(情)이라고 하니, 명덕은 진실로 치우치게 성에다 소속시키는 것은 불가할 것이고, 마음에는 원래 선(善)도 있고 악(惡)도 있으니 명덕 또한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 없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는데, 정자(程子)는 어찌하여 이치에 선과 악이 있다고 말하였는가?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理)

41) 1783년 식년감시초시(一所), <問. 大學之明德, 心歟? 性歟? 以心看者, 則曰朱子之釋明德, 與孟子盡心章註同. 以性看者, 則曰傳首章天之明命, 卽所謂明德, 而與中庸天命之性同, 兩說孰是? 願聞明的之論. >

자(字)는 합(合) 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하였는데, 어느 설(說)이 타당한가? 확실한 논의를 듣고 싶다.⁴²⁾

위는 1783년(정조 7)에 식년감시 초시에서 출제된 시관지제이며, 아래는 1796년(정조 20) 11월에 초계 문신들에게 지어 올리라고 명한 어제이다. 두 시제는 명덕을 마음과 성품 중 어디로 분속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묻고 있다. 다만 감시에서는 각 논리의 근거로 주자의 설과 『중용』의 경문을 예로 들며 간단하게 묻고 있는 반면, 친시에서는 심(心)과 성(性), 그리고 정(情)의 개념까지 더하여 각 설마다의 근거와 반론을 함께 제시하며 세세한 질문을 연속하여 물었다. 또한 율곡 이이(李珥, 1538-1584)가 옥계 노씨의 설에 대해 논변한 점⁴³⁾을 탁월한 견해라 칭하며 이에 대한 문신들의 의견을 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자가 ‘이치에 선과 악이 있다.’고 한 말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명하였다. 정조는 주희가 전제한 여러 성리학적 개념들을 재해석하고 명덕을 재규정하여 왕권 강화의 논리로 삼고자 하였는데⁴⁴⁾, 이러한 시제 출제

42) 『홍재전서』 권56, 잡지3, 問明德, 〈明德、心耶？性耶？心是大人赤子之心耶？性是本然氣質之性耶？若謂本然則何以爲生之謂性，若謂氣質則何故言天命之性耶？赤子大人之心純善，則心之惡者，當屬於何？心體本自虛靈，明固知覺，德亦釋之以心耶？下一德字，便不可單以心稱之。玉溪本心之喻，近世儒者如李文成輩，甚味之。此乃文成見得之卓乎？然本心之所以爲明德，明德之不獨爲心性，皆可一一歷舉而指陳歟？未發曰性，已發曰情，則明德固不可偏屬之性歟？心自有善有惡，則明德亦不可泛稱曰心歟？純善無惡者，性也，而程子何以言理有善惡歟？或曰，理字當作合字看，或曰，記錄之誤，何說爲得？欲聞的確之論。〉 이에 대한 번역은 『(국역) 홍재전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를 참고하였다.

43) 옥계 노씨 노효손은 『대학장구』의 소주(小註)에서 ‘명덕은 본심(本心)이다. 허(虛)는 마음의 고요함[心之寂]이고 영(靈)은 마음의 느낌[心之感]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윤곡은 “비록 외물에 감응하기 이전일지라도 영(靈)은 본래 자약(自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마음의 느낌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栗谷全書』 권14, 「기대학소주의의(記大學小註疑義)」

44) 정조의 명덕 해석과 관련한 논의는 소진형, 「정조의 明德 해석과 왕권강화 논리」(『한국사회과학』 31집, 2009)에 자세하다.

는 자신의 생각을 문신들에게 주입하기 좋은 도구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조는 이처럼 문신들의 과작이 기대에 못 미쳐 재시험[更試]을 보거나, 같은 점수를 받은 문신 가운데 최후의 1인을 뽑는 비교시(比較試) 등을 볼 때⁴⁵⁾ 주로 경문의 구절로 시제를 출제하였다. 문신들의 학업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 십삼경의 경문을 시제로 활용함으로써, 학문 연마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한 의도를 볼 수 있다.

(3) 학술적 정체성과 관심사

조선 후기에 출제된 경학 관련 어제들은 당대의 정세를 드러내는 시제⁴⁶⁾, 해당 시험과 관련한 시제⁴⁷⁾,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 출제에 적합한 시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시관지제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특징으로, 그만큼 특색 없는 시제들이 대거 출제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정조는 어제의 출제를 통해 자신의 학술적 정체성을 한껏 드러내고자 하는 등 자신만이 낼 수 있는 시제를 출제하였는데, 이는 다른 군주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여러 경서 가운데 특히 『맹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추서춘기(鄒書春記)』에서 『맹자』『진심(하)』30장의 내용을 비판한 신하에게 “그대는 맹자를 의심한 이태백(李泰伯)을 본받으려 하는가? (중략) 나는 맹자를 신명처럼 경외하기에 감히 불을 들어 논변하여 스스로 모독하고 설만히 여긴 죄과에 빠지지 못하겠다.”⁴⁸⁾고 하였

45) 1796년(정조 20) 11년에 치러진 친시 비교시에서 출제된 시제는 ‘觚’로, 이는 『논어』「雍也」에 출전을 두고 있다.

46) 『숙종실록』 1685년(숙종 11) 9월 2일 기사, “上遣史官, 摘奸成均館及四學到記儒生, 親出賦題, ‘心通於道然後, 能辨是非.’使都承旨任相元, 詣泮宮, 與大提學李敏叙, 試到記儒生, 賦居首人宋道涵及第. 人以為‘方今人心陷溺, 是非淆亂, 御題殊有意思云.’”

47) 절일제의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순조대 이후 시행된 구일제에서 『詩經』「豳風·七月」의 ‘九月築場圃’, ‘九月授衣’가 4번 이상 중복 출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가 스스로 맹자를 경외한다고 말한 것을 대변하듯, 정조 연간의 친시 시제 가운데는 『맹자』에서 인용한 시제가 무려 6문제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상어(常語)」를 가지고 변(辯)의 문체로 친시의 간 시제를 출제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초계문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태백(李泰伯)의 「상어(常語)」를 몰라서 두세 시권 외에는 모두 제목과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상작(常作)'이나 '상한(常漢)'의 상(常)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중 송면재(宋冕載)의 시권은 더욱 경악스러우니 우선 초계문신에서 빼고 올해 삼동(三冬)까지 심혈을 기울여 공부해서 지어 바치게 하라.⁴⁹⁾

「상어」는 송대의 학자 이구(李觀, 1009-1059, 태백은 그의 자)가 『맹자』의 설을 의심한 데 대해 『맹자』를 옹호하던 입장인 여윤문(余允文)이 논변하고, 주희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보완한 것으로, 『회암집(晦菴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구가 『맹자』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그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였기에, 맹자를 존숭했던 정조는 이에 대한 문신들의 생각을 물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신들이 대부분 이태백과 여윤문의 논변을 알지 못하여 엉뚱한 내용으로 글을 지어 올렸고, 특히 송면재(宋冕載, 1764-?)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초계문신에서 잠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정조는 또한 공자의 제자 유약(有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공문십철(孔門十哲)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시 문신과 유생들 사

48) 『弘齋全書』 권121, 「鄒書春記」(二), “子欲效疑孟之李泰伯耶. (중략) 吾則於鄒聖, 敬之如神明, 不敢下筆論辨, 自歸瀆褻之科, 幸有以恕之.”

49) 『일성록』 1798(정조 22) 8월 19일 기사. “教以名以抄啓文臣, 不知李泰白之常語, 數三試卷外, 皆是外題, 甚至常作常漢之常, 可謂羞恥. 其中宋冕載試倦, 尤爲駭然, 姑拔於抄啓, 限今年三冬, 著意攻業, 以其所作呈納.”

이에서는 유약을 대성전에 올려 배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듯 하다. 정조대의 문신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문집을 살펴보면, 「유자를 대성전에 올려 배향하기를 청하는 소[請陞配有子大成殿疏]」가 수록되어 있어 당대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소는 ‘성균관 유생을 위해 대신 지었으나 성상께 올리지는 않았다.’고 기록⁵⁰⁾되어 있다.

정조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는 1798년(정조22) 9월 12일에 ‘평음후(平陰侯) 유약(有若)을 성전(聖殿)에 올려 배향(配享)하라는 윤음(綸音)’을 내렸다. 정조는 『논어』에 기록된 공문십철에 대해 “단지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에서 부자를 따른 사람들에 관한 감상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도통을 전한 아성(亞聖)인 증자 또한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⁵¹⁾ 그러나 이 윤음은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조는 같은 날 도기유생을 대상으로 한 제술에서 <본조 태학생이 유자를 성전에 올려 배향하는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으라.[擬本朝太學生請以有子若陞配聖殿]>는 시체를 전(箋)의 문체로 출제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생(諸生)이 과연 이 어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겠는가. 대저 공문(孔門)의 십철(十哲)이란 바로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에서 부자를 수행했던 자들을 말한다. 따라서 유자가 비록 사과(四科)의 대열에 끼지는 못했지만, 만약 그 도덕을 논한다면 어찌 10철의 아래에 가겠는

50) 『耳溪集』, 권21, 「請陞配有子大成殿疏 【爲館學生代作, 未徹】」

51) 『정조실록』, 1798년(정조 22) 9월 12일 기사, “十哲之目, 不知創自何人, 而特因論語中四科之語, 數其人而謂之哲. 然論語此說, 只就從於陳蔡之人, 而爲此分屬之科, 以見聖門人才之盛而已. 夫以曾子, 傳道統之亞聖, 而亦不與焉, 則欲以此蔽聖門之賢哲, 固矣哉, 不綦陋乎?”

가. (중략) 그리고 ‘효(孝)와 제(悌)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고 한 교훈이야말로 전성(前聖)이 내놓지 못했던 것을 내놓은 것인데, 이런 마디 말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독실하게 실천하고 조예가 깊었던가 하는 것을 천 년이 지난 뒤에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 안자와 증자 두 분 성인을 사성(四聖)의 자리로 승배(陞配)한 것을 보면 유자를 십철의 반열에 올렸어야 마땅한데, 그 당시 육상산(陸象山)의 여파(餘派)가 감히 정도에 어긋난 주장을 창도하면서 거꾸로 ‘효와 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고 한 말을 함부로 헐뜯은 결과 결국에는 자장(子張)을 승배하고 유자는 그대로 무(庶)의 향사(享祀)를 받게 하였으니, 이 어찌 영원토록 사론(士論)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정조는 맹자가 ‘유약이 공자와 비슷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인과 비슷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하여, 그의 언행이나 기상을 감히 부자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인의 경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환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⁵²⁾ 그러면서 유자에 대한 평가가 그간 절하되었음을 한탄하며 성학(聖學)이 날로 위축되고 사설(邪說)이 마구 유포(流布)되는 때에 이러한 주제를 행사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기에 이 시제를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게 된 것이라고 출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음 반포과 시제 출제에도 불구하고 유약을 문묘에 배향하고자 했던 그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799년(정조 23) 4월에 충청도 유생 김노성 등이 유자를 대성전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다시금 올렸으나, 정조는 “너희들이 청한 것은 비록 바른 도를 지키고 성인의 학문을 높이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이 조치는 신중히 해야

52) 『정조실록』, 같은 날 기사, “且孟子不曰, ‘有若似孔子,’ 而曰: ‘似聖人’ 則其言行氣像, 雖不敢比倫於夫子, 而其不遠於聖域, 則何如其較著也?”

한다. 너희들은 우선 물리가 학업을 낚도록 하라.”⁵³⁾고 하며 오히려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명의 학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한 나라의 군주로서 예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조의 모습이 그려진다.

4. 나가며

사서오경의 경문은 과거 시험 시제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용처로, 관리를 선발하고자 하는 시험에서 유생들의 기초 실력을 평가하고 경학적 소양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어제에서는 시관지제에 비해 경문의 인용 비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절일제에서는 순조대 이후로 경학 관련 시제가 급증하였다. 이는 영조대 이후부터 절일제에서 어제 출제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서(史書)에서 주로 출제하던 것을 경문으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학에서 출제된 어제들은 과거 시험을 대비하며 학업에 몰두하는 성균관 유생과 방외 유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고 이들을 권면하는 데 적합한 시제들이 많았다. 다만, 이미 생원과 진사를 합격하고 성균관에 거제하며 국가의 관리를 받았던 성균관 유생들에게는 다소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방외 유생들에게는 장학의 목적으로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취 목적에 따라 다른 출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정조대의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했던 친시에서는 기준에 출제

53) 『정조실록』, 1799년(정조 23년) 4월 27일 기사, “批曰，爾等所請，雖出於衛正道尊聖學，斯舉也在所重慎。爾等姑爲退修學業。”

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위주로 하여 문신들의 해이해지는 기강을 바로잡고 수준을 제고하는 도구로 삼았다. 또한 문신들의 제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실력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갱시의 시제로 자주 출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주는 개인 학자로서의 뛰어난 식견과 열정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당대 학술적 관심사를 시제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정조대 이후에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다시 부활했던 현종대의 경우 시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부분이 아쉬운 지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균관 및 방외의 유생과 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어제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각 왕조간 자료의 불균형과 제도적 상이함으로 인해 고른 논의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순조대 이후 국왕들의 어제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庚寅九日製科作』(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895)
- 『庚寅七月製科作』(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873)
- 『科儻』(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26-15)
- 『內閣日曆』
- 『不欺錄』
- 『承政院日記』
- 『實齋日乘』
- 『冷齋集』
- 『日省錄』
- 『朝鮮王朝實錄』

『弘齋全書』

- 김광년, 「奎章閣의 1781년 — 『內閣日曆』을 통해 본 抄啓文臣 應製의 실상 —」, 『동양고전연구』 85집, 동양고전학회, 2021.
- _____, 「조선 과시의 잠·명·송 연구」, 『한문고전연구』 4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 박선이, 「正祖代抄啓文臣 製述과 그 의미에 대하여 -試題 출제 경향과 문체정책과 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52집, 2025.
-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집, 2016.
- 소진형, 「정조의 明德 해석과 왕권강화 논리」, 『한국사회과학』 31집, 2009.
-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1.
-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 『남명학연구』 67집, 2020.
- _____, 「과거제 폐지 이후의 경학 시험과 출제 문제 고찰 - 經義問對를 중심으로 -」, 『동아한학연구』 20집, 2025.
- 이은진, 「『不欺錄』을 통해 본 정조대抄啓文臣의 활동」, 『장서각』 50집, 2023.

【부록】 유생 및 문신들을 대상으로 출제한 경학 관련 어제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	영조 18	1742.9	到記儒生 應製		行一三善 (『禮記』「文王世子」)	承政院 日記
2	영조 43	1767.7	七夕製	箴	宋陳桓進夙興夜寐 (『詩經』「大雅·抑」)	科儻
3	영조 43	1767.10	翰林召試	表	本朝宰樞之臣請以風行草偃之義益勵 頽俗使一世之人咸趨於熙皞之城 (『論語』「顏淵」)	科儻
4	영조 44	1768.1	人日製	表	周呂尚謝拜鷹揚將 (『詩經』「大雅·大明」)	科儻
5	영조 44	1768.7	七夕製	表	周太學生謝濟濟多士文王以寧 (『詩經』「大雅·文王」)	科儻
6	영조 44	1768.9	九日製	表	本朝群臣進衛武公抑詩一篇仍請益勉 自強(『詩經』「大雅·抑」)	科儻
7	영조 45	1769.12	柑製	表	周大司徒請以鄉三物教萬民 (『周禮』「地官·大司徒」)	科儻
8	영조 46	1770.11	柑製	表	周朝樂正謂順先生詩書禮樂春秋教以 禮樂冬夏教以詩書(『禮記』「王制」)	科儻
9	영조 46	1770.12	翰林召試	表	虞朝契謝命爲司徒敬數五教在寬 (『禮記』「檀弓」)	科儻
10	영조 48	1772.2	三日製	表	虞朝八元八凱賀彈五絃琴詠南風雅 (『春秋左氏傳』「文公18年」)	科儻
11	정조 즉위	1776.12	翰林召試	表	周群臣賀延先登于岸 (『詩經』「大雅·皇矣」)	科儻
12	정조 1	1777.7	文臣應製	表	周將士等謝於至牧野之日諭以逖矣西 土之人(『書經』「牧誓」)	科儻
13	정조 1	1777	泮製	箴	三畏 (『論語』「季氏」)	科儻
14	정조 1	1777	泮製	頌并 引	屢豐年 (『春秋左氏傳』「宣公 12年」)	科儻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5	정조 1	1777.11	柑製	表	虞伯夷謝拜秩宗諭以夙夜惟寅直哉惟清 (『書經』「舜典」)	科儻
16	정조 3	1779.12	柑製	表	齊群臣賀九合諸侯不以兵車 (『論語』「憲問」)	科儻
17	정조 4	1780.3	三日製	頌	王配于京 (『詩經』「大雅·下武」)	科儻
18	정조 4	1780.12	柑製	表	晉白季進冀缺 (『春秋左氏傳』「僖公 33年」)	科儻
19	정조 5	1781.9	九日製	誥	夏錫土姓 (『書經』「禹貢」)	科儻
20	정조 5	1781	抄啓文臣 親試	表	周群臣賀周公進無逸篇 (『書經』「無逸」)	科儻
21	정조 6	1782.1	人日製	賦	自古有年 (詩經 小雅 甫田)	科儻
22	정조 10 (1804.01)	1786.3	親試, 人日製	辨, 賦	春王正月 (『春秋』「隱公·元年」)	日省錄
23	정조 12	1788.8	抄啓文臣 親試	箋	梁孟子請勿疑 (『孟子』「梁惠王(上)」)	科儻
24	정조 13	1789.1	人日製	表	周群臣賀猶歟漆沮潛有多魚以享以祀 以介景福 (『詩經』「周頌·潛」)	科儻
25	정조 13	1789.11	抄啓文臣 親試	銘	周公鳥 (『詩經』「豳風·狼跋」)	科儻
26	정조 14	1790.3	抄啓文臣 親試	表	陶唐群臣賀驅蛇龍而放之菹 (『孟子』「滕文公(下)」)	科儻
27	정조 14	1790.6	抄啓文臣 親試	表	周群臣賀於游歌卷阿之日召康公以顚 顚卬卬如圭如璋令聞令望豈弟君子四方爲綱之章進于王 (『詩經』「大雅·卷阿」)	科儻
28	정조 14	1790.8	七夕製 (賜進士)	表	陶唐后稷謝命卽有邰家室 (『詩經』「大雅·生民」)	科儻
29	정조 15	1791.10	泮製	表	周少師少傅少保等謝於拜官之日命曰貳公弘化弼予一人 (『書經』「周官」)	科儻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30	정조 15	1791.8	泮製	表	周有功諸侯等謝於鍾鼓饗之之辰錫以彤弓 (『詩經』「小雅·彤弓」)	科儻
31	정조 15	1791.12	泮製	賦	寧適不來，微我弗顧 (『詩經』「伐木」)	內閣 日曆
32	정조 16	1792.4	泮製	賦	文王孫子，本支百世，凡周之士，不顯亦世 (『詩經』「大雅·文王」)	嶠南 賓興錄
33	정조 17	1793.3	泮製	表	擬周召虎請天子萬年 (『詩經』「大雅·江漢」)	日省錄
34	정조 17	1793.4	유생응제 (강원)	詩義	其追其貊 (『詩經』「大雅·韓奕」)	關東 賓興錄
35	정조 17	1793.4	유생응제 (강원)	賦	人之好我，示我周行 (『詩經』「小雅·鹿鳴」)	關東 賓興錄
36	정조 17	1793.6	일차유생 재술	賦	小臣拜獻南山壽 (『詩經』「小雅·天保」)	日省錄
37	정조 18	1794.4	抄啓文臣 親試	賦	既醉八章備五福 (『詩經』「大雅·既醉」)	實齋 日乘
38	정조 18	1794.4	유생응제 (제주)	論	觀於海者難爲水 (『孟子』「盡心(上)」)	耽羅 賓興錄
39	정조 18	1794.4	유생응제 (제주)	詩	厥包橘柚 (『書經』「禹貢」)	耽羅 賓興錄
40	정조 18	1794.4	유생응제 (제주)	賦	駢牝三千 (『詩經』「鄘風·定之方中」)	耽羅 賓興錄
41	정조 18	1794.11	柑製	表	周大人進衆維魚矣 實維豐年之占 (『詩經』「小雅·無羊」)	日省錄
42	정조 18	1794.11	抄啓文臣 親試	表	周小臣請媵者致者 (『儀禮』「燕禮」)	實齋 日乘
43	정조 19	1795.5	유생응제 (영홍, 함홍)	賦	文武維后，燕及皇天，克昌厥後 (『詩經』「周頌·雔」)	豐沛 賓興錄
44	정조 19	1795.12	抄啓文臣 親試	賦	雪宮見孟子 (『孟子』「梁惠王(下)」)	實齋 日乘
45	정조 19	1795.12	抄啓文臣 親試	七言 律詩	日中爲市 (『周易』「繫辭傳」)	實齋 日乘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46	정조 20	1796.11	抄啓文臣 親試	疑	明德 (『大學』經1장)	實齋 日乘
47	정조 20	1796.11	抄啓文臣 親試	銘	觚 (『論語』「雍也」)	實齋 日乘
48	정조 20	1796.11	抄啓文臣 親試	歌	廣載 (『書經』「益稷」)	實齋 日乘
49	정조 20	1796.12	抄啓文臣 親試	箋	晉樂鍼詩攝飲子重 (『春秋左氏傳』「成公 16年」)	日省錄
50	정조 20	1796.12	抄啓文臣 親試	五言 律詩	玄圭 (『書經』「禹貢」)	實齋 日乘
51	정조 20	1796.12	抄啓文臣 親試	箋	楚晉郤至請蒙甲冑敢肅使者 (『春秋左氏傳』「成公 16年」)	實齋 日乘
52	정조 21	1797.12	抄啓文臣 親試, 柏製	箋	齊群臣賀卽墨絳繪之功因鑿鍾易羊之心 (『孟子』「梁惠王(上)」)	日省錄
53	정조 22	1798.8	抄啓文臣 親試	序	大學衍義補 (『大學』 관련)	實齋 日乘
54	정조 22	1798.8	抄啓文臣 親試	辯	常語 (『孟子』 관련)	實齋 日乘
55	정조 22	1798.8	抄啓文臣 親試	歌	牛戴牛 (『周禮』「考工記·弓人」)	實齋 日乘
56	정조 22	1798.12	到記儒生 (秋)	箋	本朝太朝生, 請以有子 若陞配聖殿	承政院 日記
57	순조 즉위	1800.12	柏製	賦	道也者不可須臾離也 (『中庸』 1장)	日省錄
58	순조 1	1801.1	人日製	賦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中庸』 1장)	日省錄
59	순조 1	1801.2	春到記	賦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書經』「大禹謨」)	臨軒 題叢
60	순조 1	1801.3	三日製	賦	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書經』「堯典」)	日省錄
61	순조 1	1801.7	七夕製	賦	命汝作納言 (『書經』「堯典」)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62	순조 1	1801.9	九日製	賦	鴻雁來賓 (『禮記』「月令」)	日省錄
63	순조 1	1801.11	柑製	表	擬周朝群臣賀箕子陳洪範九州 (『書經』「洪範」)	日省錄
64	순조 2	1802.2	人日製	表	擬夏群臣賀拜昌言 (『書經』「臯陶謨」)	日省錄
65	순조 2	1802.12	柑製	表	擬魯孔子謝問政 (『中庸』20章)	日省錄
66	순조 3	1803.1	人日製	表	擬商伊尹請俾萬姓 咸曰大哉王言 又曰一哉王心 (『書經』「咸有一德」)	日省錄
67	순조 5	1805.9	七夕製	賦	必也使無訟乎 (『論語』「顏淵」)	日省錄
68	순조 5	1806.5	三日製	表	擬殷傳說請監于先王成憲其永無愆 (『書經』「說命(下)」)	日省錄
69	순조 7	1807.1	人日製	賦	采蘋祁祁 (『詩經』「關雎・七月」)	實齋 日乘
70	순조 7	1807.3	春到記	賦	天保定爾 亦孔之固 (『詩經』「小雅・天保」)	實齋 日乘
71	순조 7	1807.7	七夕製	賦	七月流火 (『詩經』「關雎・七月」)	日省錄
72	순조 8	1808.3	泮製	銘	拱北門 (『論語』「爲政」)	日省錄
73	순조 9	1809.8	七夕製	賦	八月萑葦 (『詩經』「關雎・七月」)	日省錄
74	순조 10	1810.1	人日製	賦	蕩蕩乎民無能名焉 (『論語』「泰伯」)	日省錄
75	순조 10	1810.7	七夕製	賦	天保定爾 亦孔之固 (『詩經』「小雅・天保」)	日省錄
76	순조 11	1811.1	人日製	賦	手持一卷易況晉於性明之理胸中豁然 如明鏡大河 (『周易』「說卦傳」)	日省錄
77	순조 11	1811.4	일차유 생제술	賦	倬彼雲漢 昭回于天 (『詩經』「大雅・雲漢」)	承政院 日記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78	순조 13	1813.8	七夕製	箋	擬魯群臣賀孔子附魯頌於三百篇 (『詩經』관련)	日省錄
79	순조 13	1813.9	七夕製	賦	我善養吾浩然之氣 (『孟子』「公孫丑(上)」)	日省錄
80	순조 13	1813.12	相製	賦	天子穆穆 (『詩經』「周頌·雍」)	日省錄
81	순조 14	1814.1	人日製	賦	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 (『孟子』「盡心(上)」)	日省錄
82	순조 14	1814.3	三日製	賦	闢四門明四目達四聰 (『書經』「舜典」)	日省錄
83	순조 14	1814.7	三日製	賦	我善養吾浩然之氣 (『孟子』「公孫丑(上)」)	日省錄
84	순조 16	1816.7	三日製	賦	濟濟多士 克廣德心 (『詩經』「魯頌·泮水」)	日省錄
85	순조 17	1817.1	人日製	賦	德不孤 必有鄰 (『論語』「里仁」)	日省錄
86	순조 17	1817.3	三日製	賦	周雖舊邦 其命維新 (『詩經』「大雅·文王」)	日省錄
87	순조 17	1817.7	七夕製	賦	凡爲天下國家有九經 (『中庸』 20장)	日省錄
88	순조 17	1817.9	九日製	賦	九月築場圃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89	순조 17	1817.12	相製	賦	洪範九疇 (『書經』「洪範」)	日省錄
90	순조 18	1818.1	人日製	賦	一之日觱發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91	순조 18	1818.4	三日製	賦	清明象天 廣大象地 (『禮記』「樂記」)	日省錄
92	순조 18	1818.9	九日製	賦	九月授衣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93	순조 18	1818.12	相製	賦	來以厥包橘柚 (『書經』「禹貢」)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94	순조 19	1819.3	三日製	賦	綠竹猗猗 (『詩經』「衛風·淇奧」)	日省錄
95	순조 19	1819.9	九日製	賦	九月授衣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96	순조 19	1819.12	柑製	賦	思無邪 (『論語』「爲政」)	日省錄
97	순조 20	1820.8	七夕製	賦	謂其臺曰靈臺 (『孟子』「梁惠王上」)	日省錄
98	순조 20	1820.9	九日製	賦	明四目達四聰 (『書經』「舜典」)	日省錄
99	순조 20	1820.12	柑製	賦	有斐君子 終不可諉兮 (『詩經』「衛風·淇奥」)	日省錄
100	순조 21	1821.11	九日製	賦	觀水有術 (『孟子』「盡心(上)」)	日省錄
101	순조 23	1823.9	九日製	賦	九月授衣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102	순조 24	1824.윤7	七夕製	賦	亦有高廩萬億及秭 (『詩經』「周頌·豐年」)	日省錄
103	순조 24	1824.8	九日製	賦	受天之祐四方來賀 (『詩經』「大雅·下武」)	日省錄
104	순조 25	1825.3	三日製	表	擬殷傳說請監于先王成憲其永無愆 (『書經』「說命(下)」)	日省錄
105	순조 25	1825.9	九日製	賦	九月築場圃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106	순조 26	1826.9	七夕製	賦	周雖舊邦 其命維新 (『詩經』「大雅·文王」)	日省錄
107	순조 26	1826.9	九日製	賦	豐水東注維禹之績 (『詩經』「大雅·文王有聲」)	日省錄
108	순조 26	1826.11	柑製	表	周群臣賀鎬京辟雍自西自東自南自北 (『詩經』「大雅·文王有聲」)	科儻
109	순조 30	1830.10	九日製	賦	行夏之時 (『論語』「衛靈公」)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10	순조 30	1830.12	相製	賦	厥包橘柚 (『書經』「禹貢」)	日省錄
111	순조 31	1831.1	人日製	賦	既醉以酒既飽以德君子萬年介爾景福 (『詩經』「大雅·既醉」)	日省錄
112	순조 31	1831.9	七夕製	表	擬周群臣賀定鼎郊廟卜年八百世三十 (『春秋左傳』「宣公 3年」)	日省錄
113	순조 31	1831.10	九日製	表	擬周群臣賀周公朝至于洛則達觀于新 邑營 (『書經』「周書·召誥」)	日省錄
114	순조 31	1831.12	相製	賦	大德必得其位其祿其壽其名 (『中庸』 17章)	日省錄
115	순조 33	1833.1	人日製	賦	豐水東注維禹之績 (『詩經』「大雅·文王有聲」)	日省錄
116	순조 33	1833.3	三日製	賦	淵淵其淵 浩浩其天 (『中庸』 33章)	日省錄
117	순조 33	1833.7	七夕製	表	擬周群臣賀江漢浮浮武夫滔滔爲 (『詩經』「大雅·江漢」)	日省錄
118	순조 33	1833.9	九日製	賦	緇衣之宜兮 敝 予又改爲兮 (『詩經』「鄭風·緇衣」)	日省錄
119	순조 33	1833.12	相製	表	擬虞民人等謝同律度量衡爲表 (『書經』「舜典」)	日省錄
120	순조 34	1834.1	人日製	表	擬周群臣賀江漢浮浮武夫滔滔 (『詩經』「大雅·江漢」)	日省錄
121	순조 34	1834.7	七夕製	賦	簫韶九成 鳳凰來儀 (『書經』「益稷」)	日省錄
122	순조 34	1834.10	九日製	表	擬周群臣賀辨十有二壤之物而知其種 以教稼穡樹藝 (『周禮』「地官司徒·大司徒」)	日省錄
123	현종 1	1835.7	七夕製	賦	觀國之光 (『周易』「觀卦」)	日省錄
124	현종 1	1835.12	相製	賦	藹藹王多吉士 緯君子使 (『詩經』「大雅·卷阿」)	日省錄
125	현종 3	1837.2	三日製	賦	學而時習之 (『論語』「學而」)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26	현종 3	1837.9	九日製	賦	百穀用成 (『書經』「洪範」)	日省錄
127	현종 3	1837.12	柑製	表	擬周群臣賀經始勿亟庶民子來 (『詩經』「大雅·靈臺」)	日省錄
128	현종 4	1838.1	人日製	賦	綏萬邦 屢豐年 (『詩經』「周頌·桓」)	日省錄
129	현종 4	1838.7	七夕製	賦	七月在野 (『詩經』「關風·七月」)	日省錄
130	현종 4	1838.9	九日製	賦	鞠有黃華 (『禮記』「月令」)	日省錄
131	현종 5	1839.11	柑製	賦	乾元 (『周易』「乾卦」)	日省錄
132	현종 6	1840.1	人日製	賦	以左右民 (『周易』「泰卦」)	日省錄
133	현종 6	1840.3	三日製	賦	維莫之春 (『詩經』「周頌·臣工」)	日省錄
134	현종 7	1841.1	人日製	賦	稱彼兕觥，萬壽無疆 (『詩經』「關風·七月」)	日省錄
135	현종 7	1841.9	九日製	箋	擬豳民人等謝諭以九月築場圃 (『詩經』「關風·七月」)	日省錄
136	현종 7	1841.12	柑製	表	擬周朝群臣賀鑄京辟廡自西自東自南 自北無思不服 (『詩經』「大雅·文王有聲」)	日省錄
137	현종 8	1842.2	人日製	賦	自古有年 (『詩經』「小雅·甫田」)	日省錄
138	현종 8	1842.7	유생 응제 (참반)	賦	拱北門 (『論語』「為政」)	日省錄
139	현종 8	1842.7	七夕製	賦	謂之小成 (『禮記』「學記」)	日省錄
140	현종 8	1842.12	柑製	賦	小德川流，大德敦化 (『中庸』30장)	日省錄
141	현종 9	1843.2	三日製	賦	爲此春酒 (『詩經』「關風·七月」)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42	현종 9	1843.7	七夕製	賦	以閏月定四時成歲 (『書經』「堯典」)	日省錄
143	현종 10	1844.1	人日製	賦	聖人南面而聽天下 (『周易』『說卦傳』)	日省錄
144	현종 13	1847.2	유생 응제(交河 · 高陽 · 坡州)	賦	吉蠲爲餧 (『詩經』「大雅 · 天保」)	日省錄
145	현종 13	1847.3	三日製	表	擬殷傳說謝諭以若濟巨川用汝作舟楫 (『書經』『說命(上)』)	日省錄
146	현종 13	1847.7	七夕製	表	擬周群臣賀千祿百福子孫千億 (『詩經』「大雅 · 假樂」)	日省錄
147	현종 14	1848.1	人日製	賦	宜民宜人 受祿于天 (『詩經』「大雅 · 假樂」)	日省錄
148	현종 15	1849.4	三日製	賦	惟敷學半 (『書經』『說命(下)』)	日省錄
149	철종 2	1851.2	泮製	賦	仲春之月日在奎 (『尚書正義』「堯典」)	日省錄
150	철종 3	1852.7	七夕製	賦	黎民不飢不寒 (『孟子』「梁惠王(上)」)	日省錄
151	철종 4	1853.7	泮製	賦	天降膏露 地出醴泉 山出器車 河出馬圖 凤凰麒麟皆在郊壠 聖王之順之實 (『禮記』「禮運」)	日省錄
152	철종 4	1853.12	柑製	賦	思無邪 (『論語』「爲政」)	日省錄
153	철종 5	1854.3	유생 응제(交 · 高 · 坡)	賦	春雨露既濡 (『禮記』「祭義」)	日省錄
154	철종 6	1855.2	泮製	賦	無偏無黨 (『書經』「洪範」)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55	철종 7	1856.1	人日製	賦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詩經』「大雅·既醉」)	日省錄
156	철종 8	1857.4	三日製	賦	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周易』「繫辭傳(上)」)	日省錄
157	철종 9	1858.3	三日製	賦	自天祐之 吉無不利 (『周易』「大有」)	日省錄
158	철종 9	1858.8	七夕製	賦	獲麟 (『春秋左傳』「哀公 14年」)	日省錄
159	철종 9	1858.9	九日製	賦	文王孫子 本支百世 (『詩經』「大雅·文王」)	日省錄
160	철종 13	1862.9	泮製	賦	九月授衣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161	철종 14	1863.7	七夕製	賦	以左右民 (『周易』「泰卦」)	日省錄
162	고종 2	1865.2	人日製	賦	天地交泰 (『周易』「泰卦」)	日省錄
163	고종 3	1866.9	九日製	賦	九月築場圃 (『詩經』「豳風·七月」)	日省錄
164	고종 3	1866.11	柑製	賦	大德必得其位必得其祿必得其名必得 其壽 (『中庸』 17章)	日省錄
165	고종 4	1867.9	九日製	賦	亦有高廟 萬億及秭 (『詩經』「周頌·豐年」)	日省錄
166	고종 6	1869.1	人日製	賦	祈穀于上帝 (『禮記』「月令」)	日省錄
167	고종 6	1869.7	七夕製	賦	此七月之義也 (『詩經集傳』「豳風·七月」)	日省錄
168	고종 7	1870.7	七夕製	詩	萬物之所說 (『周易』「說卦傳」)	日省錄
169	고종 8	1871.1	璿派儒生 應製	賦	時庸展親 (『書經』「旅獒」)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70	고종 8	1871.8	九日製	賦	振振公子 (『詩經』「周南·麟之趾」)	日省錄
171	고종 9	1872.4	三日製	賦	麥秋至 (『禮記』「月令」)	日省錄
172	고종 10	1873.2	三日製	賦	以太牢祠于高祿 (『禮記』「月令」)	日省錄
173	고종 10	1873.7	七夕製	賦	屢豐年 (『詩經』「周頌·桓」)	日省錄
174	고종 11	1874.11	九日製	賦	平秩西成 (『書經』「堯典」)	日省錄
175	고종 12	1875.2	泮製	賦	受天百祿 降爾遐福 (『詩經』「小雅·天保」)	日省錄
176	고종 13	1876.2	人日製	賦	以殷仲春 (『書經』「虞書·堯典」)	日省錄
177	고종 13	1876.3	三日製	詩	其文詩書易春秋 (四經 관련)	日省錄
178	고종 13	1876.11	泮製	表	擬周召虎請天子萬年 (『詩經』「大雅·江漢」)	日省錄
179	고종 14	1877.2	일차유 생제술	頌	拜獻南山壽 (『詩經』「小雅·天保」)	日省錄
180	고종 15	1878.4	三日製	賦	彈五絃之琴歌南風之詩 (『禮記』「樂記」)	日省錄
181	고종 16	1879.7	七夕製	賦	百穀用成 (『書經』「洪範」)	日省錄
182	고종 18	1881.3	三日製	賦	雨我公田 (『詩經』「小雅·大田」)	日省錄
183	고종 22	1885.11	柑製	賦	君子萬年, 永錫祚胤 (『詩經』「大雅·既醉」)	日省錄
184	고종 24	1887.1	柑製	賦	厥包橘柚 (『書經』「禹貢」)	日省錄
185	고종 24	1887.6	七夕製	賦	時雨化之 (『孟子』「盡心(上)」)	日省錄

연번	왕조	날짜	시종	문체	시제(출전)	자료 출전
186	고종 25	1888.8	七夕製	賦	爲此春酒 以介眉壽 (『詩經』「關雎・七月」)	日省錄
187	고종 25	1888.8	九日製	賦	鞠有黃華 (『禮記』「月令」)	日省錄
188	고종 30	1893.8	七夕製	表	擬周群臣賀豐年多黍多稌 (『詩經』「周頌・豐年」)	日省錄
189	고종 31	1894.2	柑製	賦	敬授人時 / 賦 (『書經』「堯典」)	日省錄

Abstract

Royal Interests Reflected in Confucian Classics Related Examination Topics Issued by the King in Late Joseon: Focusing on Imperial-Mandated Compositions by Scholars and the Royally-administered Examination for Chogyemunsin

Yoon, Sun-young *

The present paper expands the scope of previous research on exam questions issued by the king(御題), which has mainly focused on King Jeongjo's reign, to include the lat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ithin this broader range, the discussion is narrowed to the examination question issued by the scripture of Chinese classics(經文), with the aim of examining contemporary issues, the monarch's interests, and scholarly trends.

Although the proportion of topics drawn from the Office of Royal Protocol is somewhat lower compared to those exam questions set by the examiners (試官之題), they still account for a significant share. In particular, after the reign of King Sunjo,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opics related to Confucian classics in the speci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held on seasonal festival days(節日製). This appears to be because, from the reign of King Yeongjo onward, the number of royal examination questions for holidays increased, expanding the source of topics from primarily historical records (史書) to include the Office of Royal Protocol.

The royal examination topics drawn from Confucian classics were well-suited for assessing the academic level of Sungkyunkwan scholars and other scholars outside the capital who were intensively preparing for the civil

* Researcher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 E-mail: bacaaltto@korea.ac.kr

service examinations, as well as for encouraging them. However, the pattern of topic selection var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xaminations. In the royally-administered examination(親試) targeting the royal-selected young civil officials(抄啓文臣) during King Jeongjo's reign, questions that had not previously been issued were prioritized as a means to correct the lax discipline of the officials and to improve their scholarly standards. Additionally, when officials' writing performance did not meet expectations, these topics were frequently used as subjects for reexaminations (更試) to encourage them to reassess their abilities. In this process, the monarch demonstrated, at times, both his outstanding scholarly insight as an individual intellectual and his passionate engagement with academic affairs by reflecting contemporary scholarly interests in the examination topics.

Key Words

Exam questions issued by the king(御題), Civil service examination(科舉), examination question(試題), scripture of Chinese classics(經文), King Jeongjo (正祖), Imperial-Mandated Compositions(儒生應製), Chogyemunsin (royal-selected young civil officials, 抄啓文臣), royally-administered examination(親試)

논문접수일: 2025.12.09. 심사완료일: 2025.12.19. 개재확정일: 2025.12.30.